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질병데이터 관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기대응분석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개편하고,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1개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10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예방접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료안전예방국 1개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3명(3·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미래질병 대비 과학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청장직속부서로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5명(4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연구관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위기대응분석관 3개과 중 2개과, 만성질환관리국 2개과 중 1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질병관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19. ~ 4.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염병정책국·감염병위기대응국·감염병진단분석국”을 “감염병정책국·감염병위기관리국·진단분석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상황실장 및 위기대응분석관”을 “종합상황실장·질병감시전략담당관 및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공중보건위기”로, “협력 및 교육·홍보”를 “위기소통 협력 및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국민 위기소통 체계 관리

제8조의 제목 “(위기대응분석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기대응분석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하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 제7호,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8호,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염병 등 질병 데이터 분석·평가 및 과학적 근거 제공에 관한 사항
2. 질병관리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예측 기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등 위험요인·영향 분석 및 평가
5. 감염병 등 대응 기법 개발
6. 역학 데이터 등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등 위기분석에 관한 사항
8.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관 제도·운영 총괄
10.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관련 교육훈련 기획·운영·평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질병감시전략담당관) ①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질병감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2. 질병감시체계 개발 및 평가
3. 질병감시 관련 분석·연구
4. 국외 감염병 등 정보 수집 및 분석
5. 국외 사건기반 감시체계 운영 및 분석
6. 국내외 질병 조사·감시 등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해외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
8.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0. 민원사무업무의 총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제목 “(감염병위기대응국)”을 “(감염병위기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염병위기대응국에”를 “감염병위기관리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을 “감염병 위기관리 계획”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감염병진단분석국)”을 “(진단분석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염병진단분석국에”를 “진단분석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위험병원체 등 감염병병원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청내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제1호 중 “예방접종계획의”를 “예방접종전략”으로, “시행”을 “예방접종 관련 법령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관리, 효과평가”를 “시행”으로 하고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국가예방접종”을 “예방접종”으로 하고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국가보상제도 운영

제16조제3항제12호 중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는 제외한다)”를 “(관계법령에 따라 기타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건

강위해요인은 제외)”로 하고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미래질병 관리계획”을 “기후·건강위해 관련 정책 및 계획”으로 하며, 제12호,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손상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18.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기획·조정·시행

19. 검사·측정기관 관리 및 방사선 피폭선량 감시체계 구축

20. 의료방사선 등의 건강위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수칙개발·홍보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4347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8급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7조제1항 관련)

1. 질병관리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1명
2)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2개 과	19명
3) 질병감시전략담당관	5명
4) 감염병정책국 1개 과	1명
5) 감염병위기관리국 1개 과	3명
6) 진단분석국 1개 과	10명
7) 의료안전예방국 3개 과	15명
8)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1명

2.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국립보건연구원 1개 과	6명
2)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1명
3)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1명
4) 국립감염병연구소 6개 과	39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53명
2)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12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u>질병관리청에</u> <u>운영지원과·감염병정책국·감염</u> <u>병위기대응국·감염병진단분석</u> <u>국·의료안전에방국 및 만성질환</u> <u>관리국</u> 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u>감염병정책국·감염</u> <u>병위기관리국·진단분석국</u> ·----- -----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u>종합상황</u> <u>실장 및 위기대응분석관</u> 각 1명 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 <u>종합상황</u> <u>실장·질병감시전략담당관 및 질</u> <u>병데이터과학분석관</u> ----- ----- -----.
제6조(대변인) ① (생략)	제6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 여 청장을 보좌한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공중보건 위기상황</u>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u>협력 및</u> <u>교육·홍보</u>	6. 공중보건위기----- ----- 위기소통 협력 및 교육
<신설>	7. 대국민 위기소통 체계 관리
제8조(<u>위기대응분석관</u>) ① <u>위기</u> <u>대응분석관</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 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u>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u>) ① <u>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u> 은 ----- ----- -----.
② <u>위기대응분석관</u> 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② <u>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u> 은 --- -----.

<u>1. 감염병 역학조사 제도 및 역 학조사관 운영 총괄</u>	<u><삭 제></u>
<u>2. 역학조사 관련 교육훈련 기 획·운영 및 평가</u>	<u><삭 제></u>
<u>3. 국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 및 분석</u>	<u><삭 제></u>
<u>4. 감염병 위기평가 도구 개발</u>	<u><삭 제></u>
<u>5. 역학조사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u>	<u><삭 제></u>
<u>6. (생 략)</u>	<u>9. (현행 제6호와 같음)</u>
<u>7. 감염병 유행 특성별 영향 분 석 및 평가</u>	<u><삭 제></u>
<u>8. 신종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 건위기 대응 기법 개발</u>	<u><삭 제></u>
<u><신 설></u>	<u>1. 감염병 등 질병 데이터 분석· 평가 및 과학적 근거 제공에 관 한 사항</u>
<u><신 설></u>	<u>2. 질병관리정책 연구개발에 관 한 사항</u>
<u><신 설></u>	<u>3. 감염병 예측 기법 개발 및 활 용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4. 감염병 등 위험요인·영향 분 석 및 평가</u>
<u><신 설></u>	<u>5. 감염병 등 대응 기법 개발</u>
<u><신 설></u>	<u>6. 역학 데이터 등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7. 감염병 등 위기분석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8.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관 제도·운영 총괄</u>
<u><신 설></u>	<u>10.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관련 교육훈련 기획·운영·평가</u>
<u><신 설></u>	<u>제8조의2(질병감시전략담당관)</u>
<u><신 설></u>	<u>①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u>
<u><신 설></u>	<u>②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u>
<u><신 설></u>	<u>1. 질병감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u>
<u><신 설></u>	<u>2. 질병감시체계 개발 및 평가</u>
<u><신 설></u>	<u>3. 질병감시 관련 분석·연구</u>
<u><신 설></u>	<u>4. 국외 감염병 등 정보 수집 및 분석</u>
<u><신 설></u>	<u>5. 국외 사건기반 감시체계 운영 및 분석</u>
<u><신 설></u>	<u>6. 국내외 질병 조사·감시 등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7. 해외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u>
<u><신 설></u>	<u>8.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u>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생략)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8. (생략)

제13조(감염병위기대응국) ① 감염병위기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 및 상황별 대응절차의 수립과 조정

2. ~ 12. (생략)

제14조(감염병진단분석국) ① 감염병진단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0. 민원사무업무의 총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3조(감염병위기관리국) ① 감염병위기관리국에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감염병 위기관리 계획 -----

2. ~ 12. (현행과 같음)

제13조(진단분석국) ① 진단분석국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

1. ~ 6. (생략)

<신설>

제15조(의료안전예방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2. (생략)

3. 예방접종 안전관리, 효과 평가 및 관련 시스템 운영

4. ~ 7. (생략)

8.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비축·수급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9. 국가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가격결정 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

10. 국가예방접종 백신 관련 유

--.

1. ~ 6. (현행과 같음)

7. 고위험병원체 등 감염병병원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청내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료안전예방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예방접종전략 ----- 예방접종 관련 법령 운영

2. 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국가보상제도 운영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 시행 -----

8. ~ 11. (현행 제4호 ~ 제7호와 같음)

5. 예방접종 -----

6. 예방접종 -----

7. 예방접종 -----

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u>11. 의료방사선 환자 관리·평가 및 관련 지침 등의 제·개정</u>	<u><삭 제></u>
<u>12. 의료방사선 시험검사 및 시 험법 개발</u>	<u><삭 제></u>
<u>13. 의료방사선 검사·측정기관 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u>	<u><삭 제></u>
<u>14. 유전자변형생물체·고위험병 원체·감염병병원체 등에 관한 안전관리, 관련 지침·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운영</u>	<u><삭 제></u>
제16조(만성질환관리국) ①·② (생 략)	제16조(만성질환관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만성질환관리국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2. 손상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 한 사항</u>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16. <u>미래질병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u>	16. <u>기후·건강위해 관련 정책 및 계획</u> -----
<u>12. 건강위해요인(「환경보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 유해인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정보·통계 관리</u>	<u>17. -----(관계법령에 따라 기타중앙행정기관이 소관 하는 건강위해요인은 제외)---</u> -----.
<u><신 설></u>	<u>18.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u>

<u><신 설></u>	<u>한 사업 기획·조정·시행</u>
<u><신 설></u>	<u>19. 검사·측정기관 관리 및 방사선 피폭선량 감시체계 구축</u> <u>20. 의료방사선 등의 건강위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수칙 개발·홍보</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8